

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신고자				
피상속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상속개시일			
신청인 (상속인)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
2. 동거주택 현황						
동거주택	소재지					
	취득일		① 동거기간 (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)		② 평가가액 (주택가액-담보채무액)	
	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		[] 해당 [] 해당안됨 ④ 예외유형			
상속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⑤ 동거주택지분	요건충족 여부		⑧ 요건충족 지분
				⑥ 10년 이상 동거	⑦ 무주택자 (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 포함)	
	⑨ 계					

3. 동거주택 상속공제		
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 (② × ⑨)		
동거주택	⑪ 한도금액	6억원
상속공제	⑫ 동거주택상속공제액 (⑩과 ⑪ 중 적은 금액)	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1.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. 주민등록표등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1. "① 동거기간"란은 해당 동거주택의 취득일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적습니다. 다만,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. ※ 예시) 10년 5개월
- 2. "② 평가가액"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- 3. "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"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√ 표시를 적습니다.
- 4. "④ 예외유형"란은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.

①	②	③	④	⑤	⑥	⑦	⑧
일시적 2주택	혼인합가주택	문화재주택	이농주택	귀농주택	동거봉양	피상속인 혼인 합가주택	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

- 5. "⑧ 요건충족 지분"란은 "⑥ 10년 이상 동거"와 "⑦ 무주택자"를 모두 충족한 "⑤ 동거주택지분"을 적습니다.
- 6. "⑨ 계"란은 "⑧ 요건충족 지분"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7. "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"란은 "② 평가가액"에 "⑧ 요건충족 지분"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8. "⑫ 동거주택 상속공제액"란은 "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"과 "⑪ 한도금액"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